

제21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
제5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5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35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| 기 금 명 | 2019년도말 구성액 ① |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| | 2020년도말 구성액 (④=①+②-③) | 증 감 ⑤=④-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수입② | 지출③ | | |
| 남북교류 협력기금 | 0 | 50,000 | 2,200 | 47,800 | 47,800 |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가. 기금 개요

본 기금은 2019년에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하고자 2019년에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 되었음.

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일정책 및 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 추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2020년도 기금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확보임

- 1) 재원조성 : 구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
- 2) 지원기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
- 3) 지원대상은 지원대상
 - 기금의 조성,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 -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경비
 -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 경비

(표1)2020년도 자금수지총괄

(단위 : 천원)

| 수입 계획 | | | 지출 계획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항 목 | 수입액 | 전년도수입액 | 항 목 | 지출액 | 전년도지출액 |
| 합 계 | 50,000 | 0 | 계 | 50,000 | 0 |
| 전 입 금 | 50,000 | 0 | 비용자성사업비 | 2,200 | 0 |
| | | | 예 치 금 | 47,800 | 0 |

201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에 전입금으로 5,000만원이며
비용자성사업비 220만원과 예치금 4,780만원임.

나. 검토 결과

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익은 전입금으로 남북통일을 준비하고
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일정책 및 금천구와
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
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 추진함에 있어 기여할 수 있도록
본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에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

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

① 기금은 세계현금(세계현금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

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비목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)

-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.
-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.
-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장)·관(관)·항(항)으로 구분하고,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7. 19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33호, 2019. 7. 19., 제정]

제8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)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(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(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